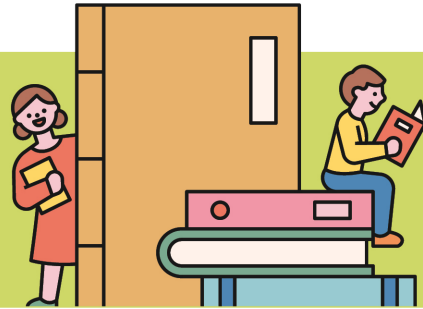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사례집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사례 중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일부 재구성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정 등으로 인한 적용 시점에 따라 관련 질의에 대한 최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는 각 학교급별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의 수록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 본 사례집은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질의가 있으실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탑재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될 수 있는 학교급을 의미합니다.

2023학년도 질의·회신 사례이므로 해당 질의의 근거로만 이해하시고, 2024학년도에는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근거를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PART 01

KEYWORD

Q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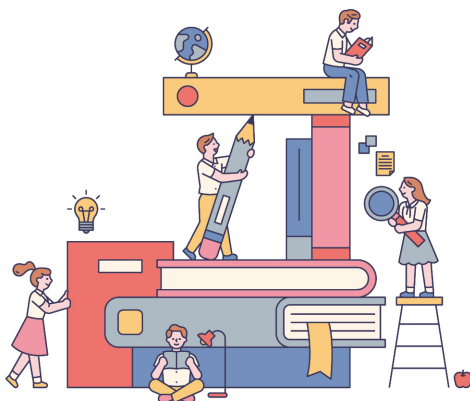
A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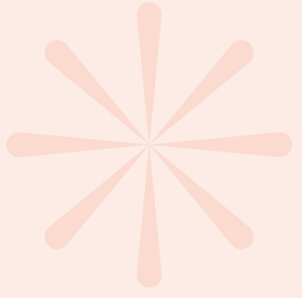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8쪽, 중 39쪽, 고 37쪽)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9쪽, 중 39~40쪽, 고 37~38쪽)

활용하기

- 본 사례집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web/main/index.do>) [자료실]-[참고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다운 받아 키워드 검색을 하면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집에서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키워드 색인을 수록(색인 페이지 적시) 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 종합지원센터로 질의하기 전 질의 내용에 따른 문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나이스 지원센터: 시스템 처리 방법, 학생부 검증 오류 등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공지사항]에서 '나이스 상담센터 번호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포털 우측 상단의 나이스지원([나이스광장]-[자료광장]-[사용자 설명서])에서 '나이스 사용자 설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학생평가 지원센터(043-931-0310): 학생평가 관련 사항 등
 - 학생평가 지원포털(<https://stas.moe.go.kr>)을 통해 학생평가 관련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소속 시·도교육(지원)청: 시·도별 봉사활동 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 누가기록 입력 방법, 학적 세부사항 등
- 관련 법령 및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교육부]-[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되어 있는 '학교폭력 시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S
T
R
E
T
Z
O
C

1. 인적·학적사항	6
2. 출결상황	22
3. 수상경력(중·고등학교)	32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고등학교)	34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36
6. 교과학습발달상황	70
7. 자유학기활동상황(중학교)	82
8. 독서활동상황(중·고등학교)	85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8
10. 정정사항	96
11. 기타사항 등	107

PART 01

인적·학적사항



외국인 성명

Q1



사례1

학생의 성명은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는데 외국인의 경우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1



사례1

외국인 학생의 성명은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 성명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그대로'라 함은 공백 여부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되어 있는 성명에 공백이 있는 경우 공백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8쪽, 중 38쪽, 고 37쪽)

① 학생정보

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한다.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1

인적·학적사항



KEYWORD

유급, 수료

Q2



학기 중 출석일수 부족으로 이미 해당 학년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학생이 있습니다. 이후 남은 기간 이 학생의 출결과 학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2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수료 기준 미충족 요건이 되는 수업일 이후에도 학생은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년도 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유급 처리한 후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초·중학교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 중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7쪽, 중 37쪽, 고 35쪽)

(초_바., 중_마., 고_나.) 유급

-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 가)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예시>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 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 나)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진급대상자 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 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의 {유급자관리}에서 등록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함.
 - 다)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제외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0쪽, 중 39쪽, 고 38쪽)

[초·중] 나. 유예·면제·재취학·편입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초] <예시>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된 경우

학적사항	2023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2024.02.29. 출석일수 미달로 초등학교 1학년 유급

[중] <예시>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된 경우

학적사항	2020년 02월 07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0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2024년 02월 08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특기사항	2021.02.28. 출석일수 미달로 중학교 1학년 유급

[고] 나. 자퇴·퇴학·휴학·재입학·편입학·복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예시>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된 경우

학적사항	2020년 02월 14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0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2024년 02월 13일 ○○고등학교 제3학년 졸업
특기사항	2021.02.28. 출석일수 미달로 고등학교 1학년 유급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2쪽, 중 42쪽, 고 40쪽)

(초_라.) 마. 유급·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1) 유급·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입력하고, 유급·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후의 내용은 유급·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기재 방법

※ 유급·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 자료로 보관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3쪽, 중 43쪽)

(초_마., 중_바.)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

-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초] <예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3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7월 06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특기사항	2023.07.0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중] <예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3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7월 06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특기사항	2023.07.0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장기결석의 구체적 사유는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함(65쪽 참고).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1

인적·학적사항



정원 외 학적관리

Q3



수업일수 1/3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유예 처리 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4세대 나이스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학적 특기사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학칙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3세대 나이스에서 유예 처리 후 정원 외 학적관리하던 방식이 변경되어, 4세대 나이스에서는 유예 처리를 하지 않고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학적 특기사항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원 외 학적관리 시작일을 학적 변동일자로 하여 '2000.00.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로 입력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3쪽, 중 43쪽)

(초_마., 중_바.)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초] <예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3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7월 06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특기사항	2023.07.0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중] <예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3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7월 06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특기사항	2023.07.0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장기결석의 구체적 사유는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함(65쪽 참고).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1

인적·학적사항



전출입, 도서벽지, 원격지

Q4



사례1

종업식이 2월 15일로 계획되어 있는 A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2월 1일에 B학교로 전학을 가려 하는데 B학교는 이미 1월 10일에 종업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출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전출·전입 시 공백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타시도에서 제주도로 전입하는 것을 국내 원격지로 보고 1일의 공백을 인정하여 수업일수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1일의 공백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4



사례1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출교에서는 해당 학생을 전출 처리하고, 전입교에서는 전입학 처리를 합니다.

사례2

‘국내 원격지’의 기준은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아울러 ‘도서벽지’에 대한 판단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36호)」의 별표에 도서·벽지의 예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수업일수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전출일이 4월 5일(수)인 경우, 전입일은 4월 7일(금)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제24조(수업 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제7조(인적·학적사항)
 -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5쪽, 중 35쪽, 고 35쪽)
 - 1. 제7조(인적·학적사항)
 - [초·중]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고]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1쪽, 중 41쪽, 고 40쪽)
 - 다.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기재 방법

-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 단,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1

인적·학적사항



학적 변동 사유, 유학

Q5



사례1

작년에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휴학 등)를 하고, 올해 재취학(복학 등)한 학생이 있습니다.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사례2

고등학생이 유학으로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면 인정 유학으로 자퇴를 한 경우에 사유는 '가정 사정으로 자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자퇴' 외에는 입력이 불가능한가요?

'유학으로 인한 자퇴'라고 입력할 수는 없을까요?

A5



사례1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에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하는 학적변동의 사유는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기재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학으로 인한 자퇴'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자퇴 등의 중요한 학적 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하는 것은 필수이나, 기재예시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자퇴' 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협의하여 문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9쪽, 중 19쪽, 고 19쪽)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0쪽, 중 20쪽, 고 20쪽)
 -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5쪽, 중 35쪽, 고 35쪽)
 - 1. 제7조(인적·학적사항)
 - [초·중]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고]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0쪽, 중 39쪽, 고 38쪽)
 - ㉓ 특기사항
 - [초·중] 나. 유예·면제·재취학·편입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 [고] 나. 자퇴·퇴학·휴학·재입학·편입학·복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입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2쪽, 중 43쪽, 고 41~42쪽)
 - [초] <예시> 2022년에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받은 후 2023년에 재취학하는 경우

학적사항	2022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7월 15일 면제) 2023년 09월 04일 □□초등학교 제2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2.07.15.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 01 인적·학적사항
- 02 출결상황
-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0 정정사항
- 11 기타사항 등

[중] <예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재학 당시 학년으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2년 02월 10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4월 07일 유예)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2.04.07. 질병으로 인한 유예 2022.04.08. 정원 외 학적관리

<예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다른 학교로 다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2년 02월 10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6월 09일 유예)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2.06.09. 질병으로 인한 유예 2022.06.10. 정원 외 학적관리

[고] <예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재학 당시 학년으로 들어온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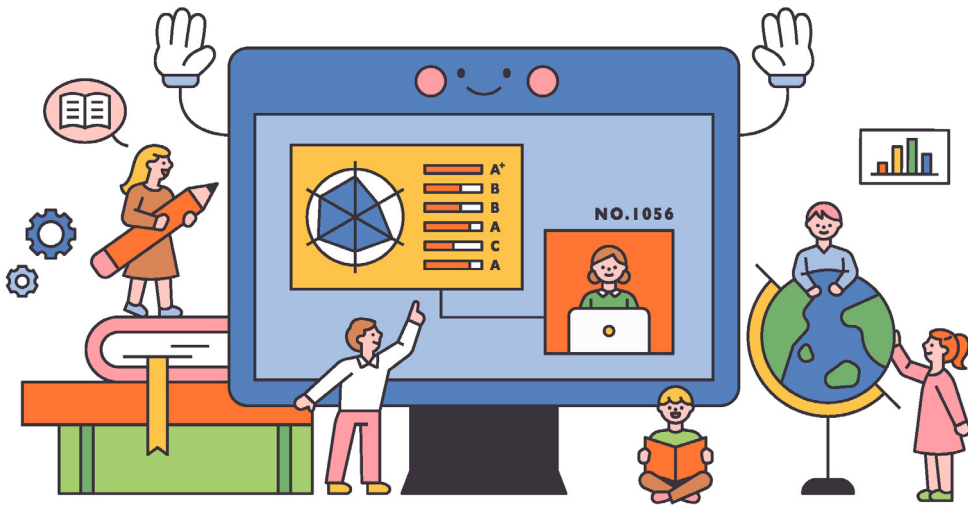
학적사항	2022년 02월 15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4월 18일 자퇴) 2023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재입학
특기사항	2022.04.18. 가정 사정으로 자퇴

<예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다른 학교로 다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2년 02월 15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6월 13일 자퇴) 2023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22.06.13.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자퇴

<예시> 인정 유학으로 자퇴 후 편입학한 경우

학적사항	2021년 02월 15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1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2월 15일 자퇴) 2023년 09월 01일 □□고등학교 제3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22.02.15. 가정 사정으로 자퇴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1

인적·학적사항



KEYWORD

유예

Q6



사례1

본교 입학일부터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여 입학과 동시에 유예 처리를 해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각각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사례2

학기 중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유예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각각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6



사례1

학업중단자(유예·면제 등)의 경우 학업중단일까지의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중학교 ‘자유학기활동상황’은 ‘(해당 사유)로 활동 내용이 없음.’ 등으로 입력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사유)로 특기사항 없음.’ 등을 입력(중학교는 자유학기만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경우 ‘(해당 사유)로 관찰 내용이 없음.’ 등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여기서 ‘해당 사유’는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예시를 참고하여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사안에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사례2

학기 중에 유예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유예일까지의 특기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쪽, 중 30쪽)
 - [초]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 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중]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 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 학습발달 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자유학기 필수),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0쪽)
 -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예시>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4쪽)
 - 나. 자유학기활동상황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6쪽)
 - 다)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0쪽, 중 20쪽)
 -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1

인적·학적사항



중복기간 자료 삭제, 학교폭력 조치사항

Q7



학생이 2022.07.07.자로 2학년에서 학업 중단하고, 2023.04.03.자로 2학년으로 재입학(재취학)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출결상황에 2022년 2학년 재학 당시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5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날짜는 2022.05.12.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7



재입학(재취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에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입학(재취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재입학(재취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입학(재취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합니다.

즉, 출결상황의 경우 중복 기간 자료 중 이전 내용은 삭제하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5호의 경우 삭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 내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기간 자료 삭제 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입력합니다.

또한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 교육정보시스템 처리 절차]

- [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정정대장등록]의 {출결상황탭}에서 {학년자료삭제}를 수행하면 선택된 학년도의 출결자료에 속해 있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실적 제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료가 일괄 삭제된다.({출결상황} 탭에서 {학년자료삭제}로 일괄 삭제되지 않은 수상경력,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 성적, 봉사활동실적, 독서활동상황, 자유학기활동상황은 중복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항목별로 삭제해야 한다.)
- 이후 중복되지 않는 이전학년도 출결자료는 [학적-전입관리-전입자료관리-이전출결자료등록]에서 다시 입력하고, 중복기간 자료 삭제로 인해 함께 삭제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적-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에서 다시 입력한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2쪽, 중 42쪽, 고 40쪽)

마. 유급·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1) 유급·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 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입력하고, 유급·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후의 내용은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3쪽, 중 129쪽, 고 141쪽)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유급·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39쪽, 중 167쪽, 고 181쪽)

4. 학적변동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시기

- 학적이 정지된 자가 복교할 당시 중복기간 동안 해당 학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인적·학적사항(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된 내용은 유지한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2

출결상황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Q8



사례1

목요일에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결석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돌아가시지 않았고, 금요일에 중요한 수행평가가 있어서 해당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였습니다. 이후 토요일에 해당 학생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결석하였는데, 이 경우 해당 학생의 경조사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2

한 학생이 할머니 사망으로 인해 사망 당일인 월요일 오후에 조퇴하였습니다. 조퇴도 출석 인정 결석 일수 안에 포함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 학생의 출석인정 결석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8



사례1

조부모 사망 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5일입니다.

목요일부터 경조사(사망)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재량휴업일이 없다면 그다음 주 수요일까지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기간 중 수행평가 등의 사유로 학생이 희망하여 출석했다라도 출석인정 결석 가능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며, 최초 주어진 5일의 기간 내에서만 인정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례2

조모 사망 당일에 실시한 조퇴도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당일 조퇴를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조퇴로 처리하는 경우, 주중에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이 없다면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가능 기간은 금요일까지입니다.

다만, 지각·조퇴·결과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므로 사망 당일 조퇴의 종류는 학교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2. 나.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57쪽, 중 59쪽, 고 56쪽)

2. 나. 10)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59쪽, 중 61쪽, 고 58쪽)

다. 지각·조퇴·결과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2

출결상황



조사·심리기간, 출석인정 결석, 소년보호재판

Q9



학생이 특수 절도로 가정법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9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범법행위를 사유로 가정법원의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 이는 법원 소년부의 조사·심리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재판을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범법행위를 사유로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해당 재판이 소년보호 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형사재판인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등을 면밀히 살펴 출결을 처리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56쪽, 중 58쪽, 고 55쪽)

나. 결석

- 4)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13조,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 관리)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PART 02

출결상황



01
인적·학적사항



출결 처리, 지각, 조퇴, 결과

02
출결상황

Q10



학생이 1교시 미인정 지각을 하고, 4교시에 병원 진료로 인한 질병 결과를 하였으며, 6교시에는 사회봉사로 인해 인정 조퇴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 학생의 출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A10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1, 4, 6교시는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되, 출결의 종류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고 단위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관련 근거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3. 지각·조퇴·결과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59쪽, 중 61쪽, 고 58쪽)

다. 지각·조퇴·결과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2

출결상황



장기결석, 출결상황 특기사항

Q11



사례1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10일 이상 장기결석할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하도록 정한 학교입니다. 다리 수술로 방학식 날까지 연속 9일간 질병 결석한 학생이 개학식 날에도 감기로 질병 결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기결석 10일에 해당하나요?

사례2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5일 이상 장기결석할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하도록 정한 학교입니다. 지난 달에 5일간 감기로 질병결석한 적이 있는 학생이 이번에 다시 감기로 5일간 질병결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결석에 대한 특기사항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감기(5일), 감기(5일)' 이렇게 입력해야 하나요? 또는 같은 사유이므로 합쳐서 '감기(10일)' 이렇게 입력해도 되나요?

A11



사례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속'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으나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는 것에 준해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는 장기결석 일수 또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제외한 수업일 기준 연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학 전후의 결석을 연속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례2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장기결석의 경우 사유를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교 장기결석 기준일이 5일이고 문의하신 결석이 각각 같은 종류(질병결석)로 연속해서 결석한 것이라면, 해당 사유를 각각 입력해도 되고, 합쳐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감기(5일), 감기(5일)'과 '감기(10일)' 둘 다 입력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0쪽, 중 20쪽, 고 20쪽)
 -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3쪽, 중 64쪽, 고 61쪽)
 - ㉓ 특기사항
 -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참여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2

출결상황



기타결석, 출결상황 특기사항, 기타지각·조퇴·결과

Q12



사례1

학생이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 기타결석을 했습니다. 혹시 기타결석의 사유를 미기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의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타결석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입력하지 않는 사유를 결정해도 될까요?

사례2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타 지각·조퇴·결과도 기타결석처럼 반드시 사유를 입력해야 하나요?

A12



사례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결석'의 경우에만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결석의 경우에는 1일이라도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은 없습니다.

사례2

아닙니다. 질병 지각·조퇴·결과 및 미인정 지각·조퇴·결과와 마찬가지로 기타 지각·조퇴·결과의 사유 또한 반드시 입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3쪽, 중 64쪽, 고 61쪽)

④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PART 02

출결상황



01
인적·학적사항



KEYWORD

단기결석, 출결상황 특기사항

02

출결상황

Q13



본교는 단기결석을 합산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주된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감기 8일, 기관지염 5일, 치통 1일, 복통 1일로 결석한 경우, '감기(8일) 및 기관지염(5일)'과 같이 주된 사유만 입력하는지 '감기 등(15일)'과 같이 주된 사유 한 가지에 모든 단기결석의 합산 일자를 병기하는지 궁금합니다.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A13



횟수가 많은 단기결석과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입력하고자 할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시 기준 횟수뿐만 아니라 주된 사유에 해당하는 날짜(횟수)만 합산할지 등 입력 기준 및 입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0쪽, 중 20쪽, 고 20쪽)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3쪽, 중 64쪽, 고 61쪽)
 ③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2

출결상황



원격수업일수

Q14



사례1

태풍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3일간 진행했습니다.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원격수업 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사례2

올해 두 번의 전출입이 있는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일수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14



사례1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 공문에 따라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운영한 원격수업 일수도 포함하여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사례2

원격수업일수 입력 안내 예시 중 ‘(전출입)’ 부분을 참고하여, 첫번째 전출교에서 ‘원격수업 일수 00일(전출일까지)’을 입력, 두번째 전출교에서 ‘원격수업일수 00일(전입일 이후 전출일까지)’을 입력, 최종 전입교에서 ‘원격수업일수 00일(전입일 이후)’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형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학생을 기준으로 두 번의 전출입이 있었다면 세 학교의 원격수업일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3331, 2023.8.31.)
- 3. 학생부 기록
 - (고교 원격수업 운영일수) '일괄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 학생 '출결 특기사항'에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 (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
 - 개인별 원격수업 참여일수가 아닌 학교(또는 학급)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입력, 위탁학생은 소속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입력
 - * 원격수업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에도 (원격수업일수 0일)로 입력
 -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외에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운영한 원격수업 일수도 포함
 - 3학년은 수시·정시모집 학생부 마감일 기준으로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 후 졸업 시 2023학년도 전체 원격수업 운영일수로 수정
 - 전출입, 재·편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기준으로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
 - ① (전출입) 전출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와 전입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전출입교에서 각각 구분하여 입력*
 - * 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전출일까지)”(전출교에서 입력), “원격수업일수 00일(전입일 이후)(전입교에서 입력)”
 - ※ 학생 전출 시 출결 특기사항에 해당 학생의 원격수업일수를 입력하여 전송
 - ② (재·편입학) 재·편입학 시부터 학생부 마감일(진급, 졸업, 대입전형자료 생성 시)까지의 원격수업 일수 입력*
 - * 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학업중단일까지), 원격수업일수 00일(재입학/편입학/복학 이후)
 - ※ 2021학년도 학업중단 후 2022학년도 재·편입학 한 경우, 학업중단 이전과 재·편입학 이후의 원격수업 일수를 각각 입력(중복기간 미삭제)
 - ③ (학업중단) 원격수업 시작일부터 학업중단일까지의 원격수업일수 입력



- 01 인적·학적사항
- 02 출결상황
-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0 정정사항
- 11 기타사항 등

PART 03

수상경력(중·고)



등급, 등위

Q15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 내의 연간 교내상 운영 계획에 '과학 탐구 대회'의 수상 인원을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으로 계획했으나, 결과가 시상 기준에 미달하여 시상할 인원이 2명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 세 가지 상황의 시상이 각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① 금상(1위), 은상(2위)
- ② 2명 모두 동상(1위)
- ③ 동상(1위), 동상(2위)

A15



① 금상(1위), 은상(2위)과 ② 2명 모두 동상(1위)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③ 동상(1위), 동상(2위)로는 수여할 수 없습니다.

'등급(위)'에서 등위의 의미는 등급에 대한 등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상(1위), 동상(2위)'로 기재하는 것은 '동일한 등급(동상)에 대해 서로 다른 등위(1위와 2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 방법에 어긋납니다.

관련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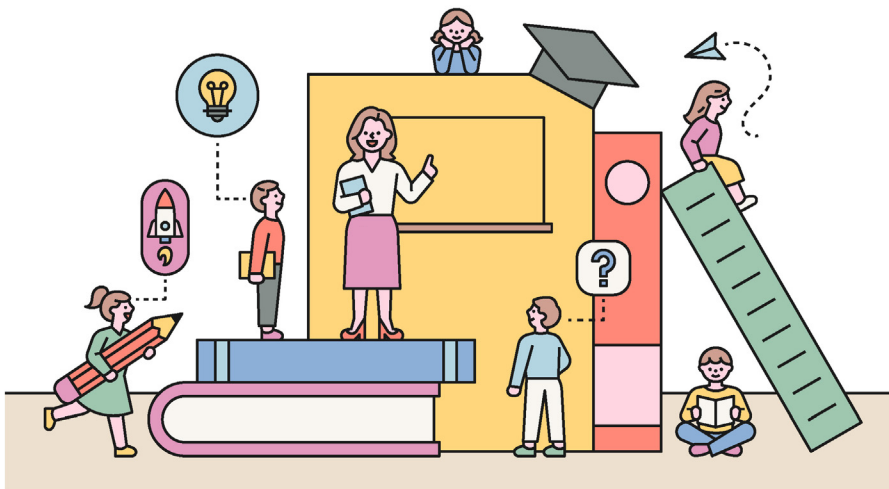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2쪽, 고 69쪽)

② 등급(위)

가. 등위는 등급에 대한 등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회 결과 확정된 등위를 입력한다.

기재 방법

○ 최우수상(1위)이 없는 경우는 우수상(1위)으로 입력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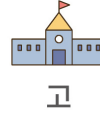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위탁, 자격증, 정정

Q16



사례1

학교생활기록부의 이전 학년도에 기재된 자격증에 오류 사항이 있을 때 정정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누가기록을 수정할 수 있나요?

사례2

위탁기관의 자료 중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자격증 취득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A16



사례1

이전 학년도에 이미 기재된 자격증에 대한 변경(수정, 삭제)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정정합니다.

다만, 이전 학년도에 취득하였으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누락된 자격증을 추가할 경우에는 정정대장 작성 없이 누가하여 기록합니다.

사례2

입력 불가입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 외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위탁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라 할지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66쪽)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77쪽)

유의사항

○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함(이전 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40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 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임원, 자치활동, 재임기간

Q17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학교, 학급 임원 활동 기재 시, 재임기간을 병기하는 임원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학급 서기'도 재임기간 병기 가능한 임원인가요?

A17



학교, 학급 임원의 범위는 학교 내 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급 서기'가 학교에서 정한 범위의 임원에 해당된다면 재임기간을 병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3쪽, 중 81쪽, 고 84쪽)

라.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안에 병기한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치활동

Q18



학급 활동의 일환으로 1인 1역할을 운영하였습니다.

1. 해당 활동을 '자유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한가요?
2. '자유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하다면 활동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3. 해당 활동을 자유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하고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기재 가능한가요?

A18



1. 학급에서 운영하는 1인 1역할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자유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합니다.
2. 1인 1역할의 활동 기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자유활동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활용하여 학급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관찰하고 평가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려는 의도라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0쪽, 고 83쪽)

㉓ 특기사항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2쪽, 중 118쪽, 고 129쪽)

1.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4쪽, 중 120쪽, 고 132쪽)

표준 가이드라인

-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2])

(1) 자율활동

학교는 학교급과 학년(군)의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이 표에 제시된 활동 내용 이외의 다양한 활동 내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2〉 자율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자치·적응·활동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습관형성활동-예절, 준법, 질서 등 • 협의활동-학급회의, 전교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자치법정 등 • 역할분담활동-1인 1역 등 • 친목활동-교우 활동, 사제동행 활동 등 • 상담활동-학습, 건강, 성격, 교우 관계 상담활동, 또래 상담활동 등
창의·주제·활동	학교, 학년(군), 학급의 특색 및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활동함으로써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학년·학급특색활동-100권 독서하기, 줄넘기, 경어 사용하기, 연극 놀이, 뮤지컬, 텃밭 가꾸기 등 • 주제선택활동-주제 탐구형 소집단 공동 연구, 자유 연구, 프로젝트 학습 (역사탐방 프로젝트, 박물관 견학활동) 등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KEYWORD

미참여

Q19



사례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계획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계획된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실시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과 활동 내용을 기재해도 되는지요?

사례2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수련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수련활동 당일에 학교에 출석한 학생들의 이수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학교에는 출석했기에 이수시간을 출석한 시간만큼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련활동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시간을 반영하면 안 되나요?

A19



사례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미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이 해당 활동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에 실제 참여한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으며 해당 활동 관련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초등은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만 해당)

사례2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떠한 사유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합니다.
 단, 수련활동 기간 중 미참여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활동에 학생이 실제 참여하였다면 해당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누가기록으로 입력 및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초등은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만 해당)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0쪽, 고 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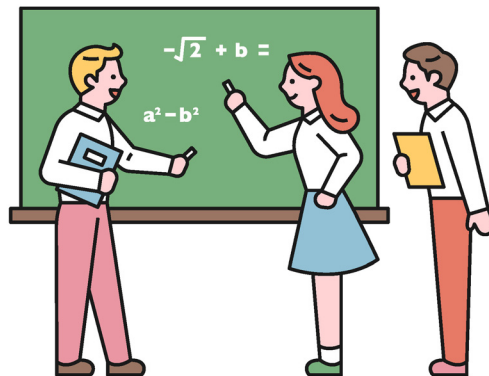
[초] 마.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중·고] ②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단,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 진로활동

Q20



자율활동 시간에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활동(관련 진로 교육 활동 포함)을 하였습니다. 해당 교육 활동을 기재하려고 할 때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기재해야 하나요,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기재해야 하나요? 학생 중 희망 진로가 해당 교육 활동과 밀접한 학생만 자율활동이 아닌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20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활동을 기재하는 경우 학교교육계획 등에서 계획한 영역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시간으로 편성·운영하였으므로 '진로활동 특기사항'이 아닌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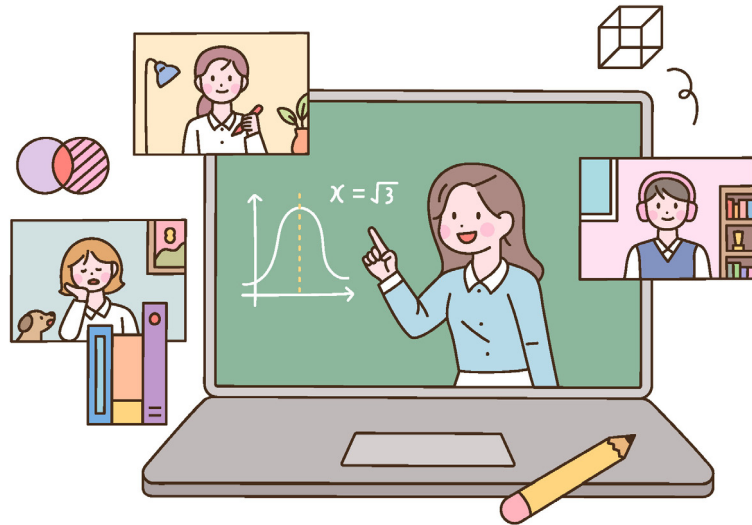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9쪽, 중 29쪽, 고 29쪽)
 마.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0쪽, 중 89쪽, 고 91쪽)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 스포츠 리그, 행사활동

Q21



사례1

재학생 중 신청자에 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또는 진로)으로 방과후 체험프로그램을 주 1회 2시간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교육계획으로 승인된 내용이면 정규교육활동 시간 외에 진행된 체험프로그램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기재해도 되나요?

사례2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한 학급 대항 스포츠 리그전에 참여한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사례3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학생회 임원 수련회를 실시했고, 참여 학생들은 금요일 오후(5~6교시)를 출석인정 조퇴로 처리하였습니다. 임원 수련회 활동 내용을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때 학생이 조퇴 처리된 금요일 오후 시간의 내용도 포함해서 기재해도 되나요? 아니면 토요일에 진행된 내용만 기재할 수 있나요?

A21



사례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또는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스포츠 리그전 등이 연간 시상 계획에 따른 '대회' 또는 '행사'이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특기사항 기재가 불가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인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례3

금요일 오후(5~6교시)에 활동한 수련회의 내용도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해당 체험활동에 참여했고, 그 체험활동이 ①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②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③ 국내 체험활동이라면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1쪽, 중 78쪽, 고 81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타 (초: 초등학교, 중: 중학교, 고: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초: 초등학교, 중: 중학교, 고: 고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현황은 (초·중: [참고자료 4], 고: [참고자료 5])를 참조함.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0쪽, 중 89쪽, 고 91쪽)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기관명, 지역명, 동아리명

Q22



지역 탐방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명과 '특기사항'에 기관명이나 지역명을 입력할 수 있나요?

A22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제외)에도 구체적인 기관명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단, 기재하고자 하는 기관이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일 경우 기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지역명이나 유적지명, 관광지명과 관련한 입력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명이나 유적지명, 관광지명이 기관명이나 상호명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지역명이나 유적지명, 관광지명을 나열하는 등의 단순 기재보다는 교육활동 중 드러나는 학생의 개별적 특기사항 위주로 기재하기를 권장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0쪽, 중 20쪽, 고 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¹⁾(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²⁾ 등

1) 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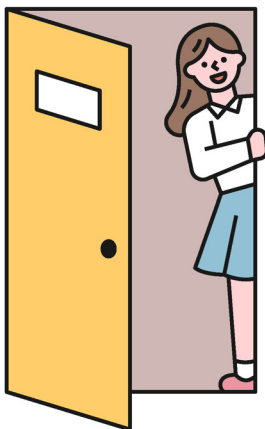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초·중: [참고자료 4], 고: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초

중

고



동아리활동, 기부

Q23



물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동아리활동으로 만든 결과물을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와 관련된 내용을 동아리 특기 사항에도 입력할 수 없나요?

A23



동아리활동으로 제작한 산출물을 기부한 경우라면 물품의 단순 기부가 아니므로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학생의 활동과 역할 중심으로 기재하며, 동아리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이므로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3쪽, 중 81쪽, 고 84쪽)

⑤ 동아리활동

가. 동아리활동 영역은 자기 평가, 학생상호 평가, 교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6~77쪽, 중 85쪽, 고 88쪽)

⑦ 봉사활동 실적

가. 3)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동아리활동

Q24



학기 초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자율동아리 입력 대상 학생 범위를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기재함'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자율동아리활동 미기재를 원하는 경우 미기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학생의 미기재 희망서(동의서)를 첨부하면 되나요?

A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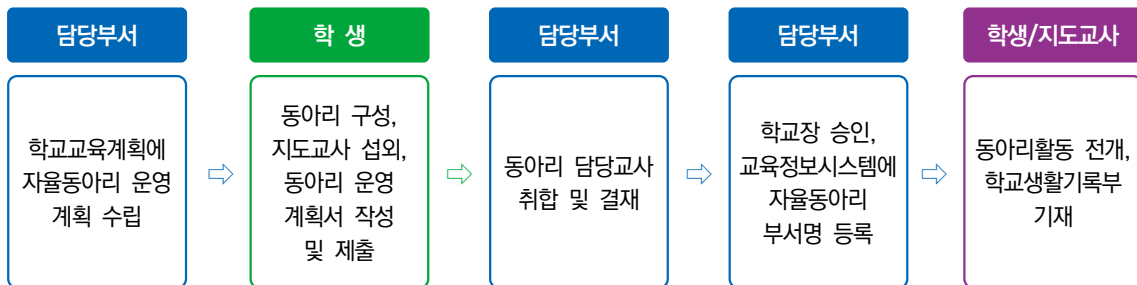
자율동아리 입력 대상 학생의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학생의 기재 희망 또는 동의 여부에 따른 기재 여부 판단이나 이와 관련한 서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4쪽, 중 82쪽, 고 85쪽)

마.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자율동아리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활동계획, 동아리 구성 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 ※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동아리활동, 학업중단

Q25



3월 초에 학업중단하는 학생의 경우, 동아리활동이 2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결석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A25



학년 초 학적변동(전출, 휴학, 자퇴, 유예, 면제 등) 학생의 경우라도 동아리활동이 편성되어 있다면 이수 시간과 특기사항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의 결석 등으로 인해 계획된 2시간을 미참여하였다면 이수 시간은 0시간으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에는 0시간인 사유를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하도록 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6쪽, 고 79쪽)

1.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나.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의 이수시간은 영역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활동 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위주로 입력한다.

[중] ※ 학업중단자(유예, 면제 등)의 경우 학업중단일까지의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의 누가기록과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입력함.

[고] ※ 자퇴·퇴학·제적·휴학의 경우 학적반영일을 기준으로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의 누가기록과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입력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0쪽, 고 83쪽)

㉓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단,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㉔ 특기사항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진로활동

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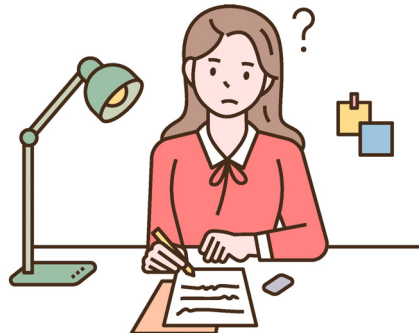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아 누가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활동한 내용이라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기록할 수 있나요?

A26



정규교육과정으로 진행된 진로활동의 누가기록만이 '특기사항'의 내용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기사항'란에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 않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운영된 진로활동'이나 그 외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입력 가능 조건에 해당하는 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결과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5쪽, 중 84쪽, 고 87쪽)

나.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다.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1쪽, 중 78쪽, 고 81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 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고등학교에 한함.)

* 학교 밖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운영 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기업 및 사설 기관 제외)으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기관

- 3) 타 학교(같은 학교급)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4)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같은 학교급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
 -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진로활동, 미이수

Q27



본교는 특정일에 진로활동이 모두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날짜에 결석하여 진로활동 이수 시간이 0시간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이수의 사유만 입력하는지,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꼭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27



학생이 결석으로 인해 진로활동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경우 '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등과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관찰하고 평가하였다면 미이수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진로 특성 관련 내용을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0쪽)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㉓ 특기사항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장기결석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 위탁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5쪽)

㉔ 진로활동

가.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전담)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나.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진로활동, 진로탐색활동

Q28



사례1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을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담임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유학기활동의 진로탐색활동 영역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학생의 진로특성을 자유학기활동의 진로탐색활동 영역에 입력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공란으로 두어도 될까요?

사례2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청 주최·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한 내용을 진로활동에 입력하려고 합니다. 2, 3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에 기재하면 되는데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진로탐색활동 영역에 기재하면 될까요?

A28



사례1,2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합니다.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진로탐색활동 영역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자유학기 활동의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1, 2학기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 진로 특성 등을 자유학기활동의 진로탐색활동에 기재하던 규정은 2020학년도에 한정된 규정입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0쪽)

③ 특기사항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3쪽)

① 자유학기활동상황

가.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의 특기사항 입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자유학기 활동을 입력한다.
- 2) 자유학기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체험활동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순회교육, 위탁학생, 장기결석, 특기사항

Q29



사례1

순회교육 또는 장기결석 등으로 자율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은 특기사항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2

학기 초 위탁학생으로 등록되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동아리활동)에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영역 특기사항에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으로 입력해도 될까요?

A29



사례1,2

순회교육이나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입력하나 순회교육이나 위탁교육기관의 내용이 없거나 장기결석 등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등과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0쪽, 고 83쪽)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누가기록, 자율활동, 진로활동

Q30



사례1

우리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학년초 학교교육 계획서 내 교내상 운영계획(또는 연간 시상 계획)에 있는 행사이며, 자율활동으로 계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활동 내용을 자율활동 누가기록에 입력해도 괜찮은지요?

사례2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을 학급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누가기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30



사례1

네. 누가기록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의 의미는 누가기록 등의 보조부가 아닌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에 대한 기재 금지 안내입니다. 그러므로, 자율활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시상계획이 있는 행사의 경우 자율활동에 누가기록은 가능하고 특기사항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사례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누가기록의 입력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로활동의 누가기록은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혹은 담임교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제4조(처리요령)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0쪽, 중 20쪽, 고 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파.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쪽, 중 30쪽, 고 29쪽)
아. 훈령 제4조제4항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기재 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0쪽, 고 67쪽)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대회' 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0쪽, 고 83쪽)
㉓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5쪽, 중 84쪽, 고 87쪽)
(초_가.) 나.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 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교 밖 교육기관, 체험활동

Q31



사례1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81쪽에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입력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 계획에 따른 체험활동'과 '3)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은 동일 의미인가요?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례2

'○○대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진로 진학 캠프'에 체험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이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학교교육계획(내부결재)을 수립했다면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나요?

A31



사례1

2)의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 계획에 따른 체험활동'과 3)의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은 다른 경우이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최 및 주관기관이 다릅니다.
- 2)의 경우는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이고 3)의 경우 타 고등학교입니다.
2. 학교교육계획의 수립 여부 차이입니다.
- 2)의 경우는 학교교육계획으로 수립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 학교장 승인 절차가 필요없으나 3)의 경우는 학교교육계획이 아니므로 활동 참가 허가에 대한 별도의 학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례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의 '학교 밖 교육기관'은 단지 장소가 학교 밖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기관을 말합니다. ○○대학교의 진로 진학 캠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시·도교육(지원)청에 문의해야 기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학교 밖 교육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인 경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81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학교 밖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운영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기업 및 사설 기관 제외)으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기관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3)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인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 내용, 기관명

Q32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중 봉사활동 실적 영역의 '활동내용'에 'OO외국인센터 안내 도우미'라고 주관기관명을 포함하여 기재가 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의 봉사실적 연계를 통해 입력된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이 포함된 활동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해야 하나요?

A32



네, 수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봉사활동 실적의 '활동내용'에 기관명 등의 기재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단,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란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9~20쪽, 중 19~20쪽, 고 19~20쪽)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6쪽, 중 84~85쪽, 고 87~88쪽)
 - ⑦ 봉사활동 실적
 -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2)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3) '활동 내용' 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위탁학생, 봉사활동, 아동학대, 가정폭력

Q33



사례1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6쪽, 중 84쪽, 고 87쪽)에 따르면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이 때 위탁기관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나 요양기관도 가능한가요?
2. (고등학교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제공되나요?

사례2

위탁교에서 아동학대 피해학생이 활동한 자료를 재적교에서 받아 입력할 때, 위탁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주관기관명과 수상경력의 수여기관에 위탁교명이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 위탁기관명을 그대로 노출시켜도 되나요?

A33



사례1

1. 기재요령(초 76쪽, 중 84쪽, 고 87쪽)에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에서의 ‘위탁기관’이라함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직업위탁기관 등과 같이 학생을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학생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2. (고등학교의 경우) 직업위탁기관 등과 같은 위탁기관에서 위탁학생이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됩니다.

사례2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시 위탁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은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나,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위탁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과 수상경력의 ‘수여기관’에 있는 위탁기관명을 재적교명으로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위탁기관명으로 입력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전 학년도 위탁기관명 노출이 현재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8쪽, 중 50쪽, 고 48쪽)
(중_파.) 타.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에 따른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1)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취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7쪽, 중 69쪽, 고 65쪽)
라. 위탁학생 출결처리 방법
7)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업위탁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 방송·정보통신매체, 국내교환학습 등의 학적관리 및 수업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

구분	학적	수업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	비고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초·중: [참고자료 5, 6] 고: [참고자료 6, 7] 참조	초·중: [참고자료 5, 6] 고: [참고자료 6, 7] 참조	초·중: [참고자료 5, 6] 고: [참고자료 6, 7] 참조	인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학교생활부적응,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생 미혼모
지방자치단체	위탁학생관리	인정	미인정	인정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호기관 위탁학생
직업위탁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직업과정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미인정	인정	건강장애학생
방송·정보통신매체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타 기관 수강학생
국내교환학습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교환학생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6쪽, 중 84쪽, 고 87쪽)
⑦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고]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2)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 2023.4.11.)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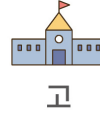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탐구활동, 실적, 주제

Q34



교과 시간에 자유 주제로 탐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탐구 주제를 기재할 수 있나요?

A34



실적(제목, 연구 주제,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의 자율탐구활동인 경우와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5개 과목에 한정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 특정 교과에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은 교과 성취기준에 기반한 활동이므로 실적 기재(주제 등)에 대해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교과세특에서는 탐구 주제 등을 포함하여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80쪽)

표준 가이드라인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19쪽)

표준 가이드라인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6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품명

Q35



국어 수업 시간에 시 창작과 수필 작성 활동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업 중 학생이 작성한 시나 수필의 제목 입력이 가능한가요?

A35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수업 산출물의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하므로, 학생이 작성한 시나 수필의 제목은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 제목에 기관명, 상호명 등을 포함하거나 학생이 작성하여 도서 출간한 경우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9쪽, 중 29쪽, 고 29쪽)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9쪽, 중 19쪽, 고 19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PART 06

교과학습발달상황



KEYWORD

전입,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Q36



학기 중간에 본교로 전입 온 학생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입력된 과목 중 일부는 전입교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입교에서 전출교의 내용을 삭제해도 되는지요? 또 일부 과목은 글자수 초과 등으로 전입교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추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36



전출교에서 입력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반영 여부(일부 반영, 삭제 등)는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제4조(처리요령)
 - ⑤ 학생이 전·편입학,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9쪽)
 - 4) 재취학, 전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재취학 및 전입학 등 이전에 실시한 평가 결과 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4쪽, 고 115쪽)
 - 5) 재취학(중)/재입학(고), 전입학, 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동일(유사) 과목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참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6

교과학습발달상황



입력 주체, 수정

Q37



1학기 교과 담당교사가 퇴직, 휴직 등의 사유로 2학기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1학기에 입력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있는 오탈자는 누가 수정해야 하나요?

A37



현재 해당 항목을 입력한 입력 주체가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학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수정할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오탈자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PART 06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Q3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을 체육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례1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인 경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필수로 입력해야 하나요?

사례2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이 아닌 경우 그 결과와 특기사항을 체육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없나요?

A38



사례1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의 등급 기재는 1등급만 체육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는 필수 입력사항은 아닙니다.

사례2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의 경우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체육 관련 교과에서 PAPS가 해당 교과의 성취기준에 따라 수행한 활동인 경우 PAPS 등급에 관계없이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며, 등급 기재 시에는 ‘1등급’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98쪽, 고 103쪽)
(중_라).(고_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7쪽, 고 122쪽)
(중_다).(고_라.)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을 체육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6

교과학습발달상황



위탁학생, 성적

Q39



성적 미산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이 본교의 평가일(시험일)에 본교로 출석하지 않고 위탁기관으로 출석하였습니다. 평가 시행일의 출결처리 및 성적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39



- 성적 미산출 위탁기관에 있는 위탁학생이 재적교 평가에 미응시하는 경우의 출결처리는
1. '소년보호기관 및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은 '미인정결석' 처리
 2.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원격수업'으로 위탁 중인 학생은 '질병결석' 처리
 3. 그 외 대안학교 등에 위탁 중인 학생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 산출 시 미응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등의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2쪽, 고 110쪽)

(중_라, 고_타)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가)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능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미응시 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중:6, 고:7]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참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64쪽, 고 178쪽)

종류	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 (대안학교 등)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성적 (지필평가/ 수행평가)	<성적미산출 소년보호기관> • 소년보호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성적미산출 위탁교(기관)> •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처리함).	• 소속교 평가에 응시함(소속교 성적산출에 포함). • 소속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함.

※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적교(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6

교과학습발달상황



KEYWORD

교양교과

Q40



사례1

학기 중 전출 시 교양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의 이수(P) 처리를 한 후 전출 자료를 전송해야 하나요?

사례2

학기 중 학업 중단(유예, 면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등)자의 경우 교양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의 이수(P) 처리를 한 후 학적 처리해야 하나요?

A40



사례1,2

학기 중 전출 또는 학업 중단 시점이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으로 학기말 최종 성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양교과의 이수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하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평가의 목표 및 방침

바. 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 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6. 기타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4) 1)~3)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98쪽)

1.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다.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의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 여부는 'P'로 처리한다. 단, 전입생의 경우는 전입교의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 여부는 'P'로 처리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1쪽)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나)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교과(목)별 평가 계획 상 최종 시험일(기말고사, 2차 시험 등)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유예·면제 등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6

교과학습발달상황



자유학기, 전출, 교과세특

Q41



자유학기 시작 2주일 만에 전출가는 학생의 경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A41



자유학기에 전출하는 학생의 경우 모든 과목에 대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0쪽)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 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 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자유학기 필수),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6쪽)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대상 범위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1)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가)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나)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 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6

교과학습발달상황



수업량 유연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Q42



사례1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을 기재하려면 사전에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실시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서에 넣어야 하나요?

사례2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을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때 해당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 대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사례3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해도 되나요?

사례4

2학기에 편성된 과목을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으로 1학기에만 편성된 A 과목과 융합하여 진행할 경우, 그 내용을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해도 되나요?

A42



사례1

학교는 수업량 유연화와 관련된 계획 및 운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도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이 16(교과수업)+1(자율적 교육활동)로 편제되어 수업량 유연화로 운영되었고,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사례2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례3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맞게 해당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은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고, 그 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방식 중 타교과 융합형의 경우 단순히 내용만을 융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과목의 유연화 시간(16+1에서 1)을 합하여 활동한다는 의미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유연화 시간을 합하여 융합 활동을 하였는데 그 활동이 해당 과목 어디에도 한정할 수 없을 때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29쪽)

마.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22쪽)

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_고등학교(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제2022-2호 일부개정 포함)

◎ 고등학교 학점의 의미 및 수업량 유연화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을 기준으로 수업량을 계산하며, 1학점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학기당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17회 중 1회의 수업은 학교가 해당 교과 또는 타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보충 수업, 동아리 활동 연계 수업, 과제 탐구 수업 등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 내용 및 운영 등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예시)〉

① 진로집중형	진로설계·체험,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진로집중학기제 운영시간
② 학습몰입형	교과별 심화 이론, 과제 탐구 등 심층적 학습 시간 운영
③ 보충수업형	학습 결손, 학습 수준 미흡 학생 대상 보충수업
④ 동아리형	학습동아리 연계 운영, 교과에 관한 학생 주도적 학습 시간 운영
⑤ 프로젝트형	교과 융합학습 등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직업 체험 프로젝트 등 운영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7
자유학기활동상황(중)



자유학기활동 미참여

Q43



사례1

특수학급 학생 중 주제선택활동과 예술·체육활동 모두 배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시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특정 요일마다 조퇴하여 진로탐색활동에 한 시간도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특기사항에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A43



사례1

자유학기활동 내용(프로그램)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 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자유학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수시간은 0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특기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기재예시를 참조하여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진로탐색활동에 1시간도 참여하지 못하여 이수시간이 0시간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있는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으므로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을 참고하여 '반복적인 조퇴로 활동 내용이 없음.', '정기적인 조퇴로 활동 내용이 없음.' 등 학교에서 적절한 문구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20쪽)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3~114쪽)

② 시간

나. 자유학기활동 내용(프로그램)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수를 입력한다.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③ 특기사항

가.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나. 자유학기활동상황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7
자유학기활동상황(중)



전출, 자유학기활동

Q44



자유학기를 운영 중인 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3월 24일자로 전출을 갑니다. 출석인정결석 등으로 실제 수업은 1~2시간 정도 참여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1~2시간만 참여한 경우 모든 자유학기활동상황을 적어서 전출을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빈칸으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A44



전출일까지의 자유학기활동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합니다.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자유학기 필수),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학기활동의 각 영역에 1시간이라도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고, 이수시간이 0시간인 경우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0쪽)
 -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자유학기 필수),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5쪽)
 - ⑧ 기타
 - 가. 자유학기 전출·입 시 처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전출 시 자유학기활동에 전출일까지의 활동 내용(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하여 전송한다.

PART 08

독서활동상황(중·고)



01
인적·학적사항



KEYWORD

저자명, 작자미상

02
출결상황

Q45



'춘향전'의 경우 저자가 '작자미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대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저자가 있는 동일명의 다른 책으로 바꾸어 써야 할까요?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A45



구전소설과 같이 저자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도서의 경우 ISBN에 저자가 '작자미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실제로 읽은 책이 아닌 다른 저자의 책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6쪽, 고 127쪽)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8

독서활동상황(중·고)



다독상, 도서 중복

Q46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 내의 연간 교내상 운영 계획에 '독서기록장 대회(또는 다독상)'의 시상 근거를 독서활동상황의 입력 조건인 'ISBN에 등록된 도서에 대한 독서기록장'으로 수립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상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대회 실적의 근거가 되는 도서들을 독서 활동상황에 입력할 수 없나요?

A46



'독서기록장 대회(또는 다독상)'의 근거가 되는 도서들을 독서활동상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안내하고 있는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과 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만을 정량적으로 입력하는 독서활동상황에는 '독서기록장 대회(또는 다독상)의 근거가 된 도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0쪽, 고 67쪽)

1. 제9조(수상경력)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6쪽, 고 127쪽)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지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PART 08

독서활동상황(중·고)



KEYWORD

도서 중복

Q47



단순 독후활동 외의 교육활동을 한 경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 등에 입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도서에 대해 '서로 다른 과목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영역 간 중복 입력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학년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된 도서를 3학년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중복 입력이 가능한가요?

A47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도서에 대해 중복 기재할 수 없는 영역은 '독서활동상황'입니다.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 내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각 영역(학년)별로 서로 다른 '교육적 목적 및 교육활동의 내용'으로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해당 영역(학년)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7쪽, 고 128쪽)

유의사항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에 입력할 수 있음.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업중단, 장기결석

Q48



장기결석으로 인해 출석일수가 0일인 학생이 휴학(유예 등의 학업중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란의 입력 예시로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이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관해서는 해당 예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란과 유사하게 '장기결석으로 관찰 내용이 없음.'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4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휴학(유예 등의 학업중단)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출석일수가 0일인 학생으로 모든 항목의 입력 자료가 없는 경우(교사의 관찰·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입력 방법을 참고하여 '장기결석으로 관찰 내용이 없음.' 등과 같이 입력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쪽, 중 30쪽, 고 30쪽)
 -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 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자유학기 필수),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0쪽, 고 83쪽)
 -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6쪽, 고 121쪽)
 -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다독상, 중복

Q49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 내의 연간 교내상 운영 계획에 따라 다독상을 시상합니다. 이 경우 다독상이 시상 계획에 있다는 이유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찾아 즐겨 읽고~' 등과 같은 '독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수 없나요?

A49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상경력 외의 서술형 항목에 '다독상과 관련된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에 대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으나 학교교육과정 이수 중 '학생의 평소 독서 습관과 활동'에 대해 관찰하고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이라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20쪽, 고 132쪽)

표준 가이드라인

-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0쪽, 고 67쪽)

제9조(수상경력)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KEYWORD

누가기록

Q50



사례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시 '행동특성 누가기록'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하나요?

사례2

'행동특성 누가기록'에 없는 내용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해도 되나요?

사례3

'행동특성 누가기록' 횟수에 대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있나요?

A50



사례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나 누가기록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2

누가기록에 없는 내용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기록된 행동특성뿐만 아니라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3

'행동특성 누가기록'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 학생부 기재요령에 누가기록의 횟수에 대한 규정은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입력·관리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2쪽, 중 118쪽, 고 129쪽)

1.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중·고] ※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4쪽, 중 120쪽, 고 132쪽)

표준 가이드라인

-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쪽, 중 30쪽, 고 30쪽)

-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 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학교생활기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입력·관리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는바, 전산입력 방법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KEYWORD

봉사활동

Q5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 실적'에 입력된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실적' 관련 내용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입력할 수 있나요?

A51



가능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 실적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인 경우 '이 봉사활동에 대한 학생의 특기사항'을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하였다면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6쪽, 중 84쪽, 고 87쪽)

⑦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5쪽, 중 121쪽, 고 132쪽)

유의사항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 가능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10

정정사항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 변경, 정정, 영주증

Q52



사례1

학교생활기록부에 외국인 학생의 성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에는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고, 학부모는 학생의 성명을 한글로 표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 메뉴에서 수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외국인 학생 중 성명 표기방식 변경(영문명에서 한글 성명으로)을 희망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이 정정의 증빙서류로 영주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영주증에 영문과 한글 성명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성명의 표기방식 변경 정정의 증빙서류로 '영주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A52



사례1

표기방식 변경을 포함한 개명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합니다. 아울러 인적·학적 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2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근거로 성명을 입력하고 있으며, 영주증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므로 영주증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표기방식 변경 정정의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8쪽, 중 38쪽, 고 37쪽)

① 학생정보

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한다.

※ 증명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9쪽, 중 38쪽, 고 37~38쪽)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가.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 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한다.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2쪽, 중 128쪽, 고 140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 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9070호)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③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10

정정사항



정정, 정정 주체, 증빙자료

Q53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점검하다가 이전 학년도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학년도 해당 항목 입력 주체인 작년 담임선생님과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이 정정해도 될까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가 없는데,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정정이 가능할까요? 삭제와 추가 기재 중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A5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 주체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현재 학년도 학생의 학급담임교사만 가능합니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자료의 기준은 2가지로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대한 심의는 위의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하며, 정정에 활용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종류와 정정이 가능한 범위 등에 대해서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제19조(자료의 정정)

-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별표 10(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

3. 정정대상 기재 및 관리방법

- 가.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 나.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제7조의 학생정보란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 서식(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 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9쪽, 중 29쪽, 고 29쪽)

- 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2쪽, 중 128쪽, 고 140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 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10

정정사항



진로희망분야, 정정

Q54



이전 학년도 진로희망분야 기재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데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54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28쪽, 고 140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 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PART 10

정정사항



KEYWORD

정정, 증빙자료

Q55



학교생활기록부를 점검하던 중 이전 학년도 서술형 항목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교외대회 참여 사실, 특정 기관명 등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으로 이전 학년도에 입력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불가 사항을 삭제하고자 할 때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A55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불가 사항에 대한 정정의 경우에는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지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이 때 정정의 증빙자료는 오류 내용이 입력된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9쪽, 중 19쪽, 고 19쪽)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2쪽, 중 128쪽, 고 140쪽)
 - 1. 제19조(자료의 정정)
 -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 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10

정정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시기

Q56



2022학년도에 A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제8호(전학) 처분을 받아 B학교로 전입 후 학업 중단(유예, 자퇴 등)한 학생이 2023학년도에 B학교로 재취학(재입학 등)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8호(전학)의 삭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A5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8호(전학)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하되, 학업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삭제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과 같이 학업 중단 후 다시 학적을 취득한 학생은 재취학(재입학) 후 실제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8호(전학)의 삭제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계속 학업 중단 상태인 경우: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삭제
2. 학업 중단하였다가 재취학(재입학 등)하여 졸업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실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단,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신고된 사안은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교폭력 사안으로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 신고일자**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다르니 해당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확인 후 삭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37쪽, 중 165쪽, 고 179쪽)

※ 유의사항

- 2023.2.28.이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의 삭제시기 및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예) 2. 학교폭력 사안으로 제8호(전학)조치를 받은 경우

① 2023.2.28.에 신고: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② 2023.3.1.에 신고: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별 기재 영역 삭제 시기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삭제 시기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출결상황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8호(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삭제 대상 아님
제9호(퇴학처분)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39쪽, 중 167쪽, 고 181쪽)

4. 학적변동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시기

- 유예·면제·자퇴, 휴학 등으로 학적이 정지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에 당해 학년도 졸업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절차에 따라 삭제한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10

정정사항



 **KEYWORD**

정정대장

Q57



정정대장 작성 시 정정 전, 정정 후 내용을 입력할 때 해당 문장 전체를 입력해야 할까요?
정정하려는 부분만 입력해도 될까요?

A5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오류내용(정정 전), 정정내용(정정 후)의 구체적인 입력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 전과 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기재예시에 준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4쪽, 중 130쪽, 고 142쪽)

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시 정정사항의 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는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정정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류내용에는 정정 전의 내용을, 정정내용에는 정정 후의 내용을 입력하되, 기재예시에 준하여 입력함.

PART 10

정정사항



정정, 4단 결재

Q58



사례1

교감선생님의 장기 연수로 모든 결재를 교무부장에게 전결 권한 위임을 하였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대상 결재 시 꼭 4단 결재를 해야 하는가요?

사례2

수상대상 결재 시에도 반드시 4단 결재를 해야 하는가요?

A58



사례1

학교 관리자의 장기연수(출장)는 4단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결이나 전결 처리를 할 수 없으며 교감선생님을 포함하여 반드시 4단 결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정정대상 결재만 반드시 4단 결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결재 경로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4~105쪽, 중 131쪽, 고 143쪽)

- 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은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는다.
 - 1)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건의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한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결재 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
 - 4단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 교감 미배치고, 담임과 담당부장이 동일인인 경우 등(장기연수, 출장 등의 사유에 따른 장기간 공석은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인원을 결재 단계에 포함하였음에도 교원 수의 부족으로 4단 결재가 불가한 경우
 - 2) '담당부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장이며, 결재 단계에 동일인이 2회 이상 포함될 수 없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10

정정사항



졸업생, 정정

Q59



나이스 사용 이전의 졸업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정 절차를 알려주세요.

A59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졸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하며,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는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의 학생정보란 정정은 제외)를 거친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습니다.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별표 10(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마.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제7조의 학생정보란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는다.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9쪽, 중 29쪽, 고 29쪽)

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

PART 11

기타사항 등



01
인적·학적사항



영문, 한자, 외국어

02
출결상황

Q60



사례1

영어 교과와 단원명, 교육활동 주제, 내용 등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영문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사례2

생활중국어 과목의 경우 한자의 사용이 많고 한자 표기도 많은데, 이와 같이 생활중국어, 한문 등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한자 동아리 등의 특기사항에 한자 표기를 할 수 있을까요?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A60



사례1,2

학교생활기록부는 한글 사용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단원명, 활동 주제, 특정 단어 등의 외국어 표기보다는 학생의 교과 관련 역량 등에 중점을 두어 한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관련 근거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제4조(처리요령)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9쪽, 중 29쪽, 고 29쪽)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 「2020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11

기타사항 등



기구명, 단체명, 조직명, 동아리명

Q61



사례1

UN, EU, IMF, WHO, OECD, UNESCO 등 국제기구도 기재 불가능한 기관명인가요?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사회교과, 영어교과, 역사교과 등 다양한 교과의 교과서에 나오는 기관들인데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기재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교내에서 자율활동으로 진행한 모의 유엔 기재 가능한가요?

사례3

동아리명으로 유네스코 기재 가능한가요?

A61



사례1,2,3

기재할 수 없습니다. 교육관련기관(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을 제외한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UN, WTO,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도 입력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9~20쪽, 중 19~20쪽, 고 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¹⁾(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²⁾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초·중: [참고자료 4], 고: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고등학교 관련 내용)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11

기타사항 등



랜드마크,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

Q62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에 랜드마크(파리의 에펠탑 등)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랜드마크의 구체적인 명칭을 입력할 수 있나요? 또한 학교생활 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에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62



랜드마크,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은 기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명칭에 구체적인 상호나 기관명 등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9~20쪽, 중 19~20쪽, 고 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¹⁾(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²⁾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초·중: [참고자료 4], 고: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고등학교 관련 내용)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20쪽)

4.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인적·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11

기타사항 등



도서출간, 교지

Q63



‘도서출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간’은 교지와 같은 모든 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ISBN에 등록된 책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학생들과 함께 책 쓰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A63



ISBN 또는 ISSN으로 등록된 도서 출간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과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 등에서 교내 문집 등의 제작은 기재 가능하며 이때 ‘출간’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제작하고’, ‘만들고’ 등의 표현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책을 만들었다는 결과보다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찰·평가되는 학생의 역할과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기를 권장합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9쪽, 중 19쪽, 고 19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사. 도서출간 사실

PART 11

기타사항 등



KEYWORD

학생부 발급

Q64



전 가족의 해외 이주로 인해 면제(또는 자퇴)한 학생이 현지 국가에서 학교 입학 절차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원에서 발급 시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서술형 항목이 미표기되어, 학기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서술형 항목이 있는 학생부 발급을 요구하는데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해서 전달해도 될까요?

A64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민원}민원업무] 메뉴를 활용하여 출력해야 합니다.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31쪽, 중 31쪽, 고 31쪽)

타. 재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유예, 면제, 자퇴·퇴학·제적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민원업무]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 ([고]학년도 종료 전 휴학하는 경우 휴학 당시 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초·중]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민원업무] 메뉴를 활용함.

[고]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민원업무] 메뉴의 '생활기록부(유,초,중,고)'를 활용함.

※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PART 11
기타사항 등



학생 성명

Q6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서술형 입력 항목에 학생의 성명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6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등 학생부 서술형 입력 항목에 학생의 성명 기재에 대한 별도 규제사항은 없으나,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성명의 기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제25조(학교생활기록)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25쪽, 중 25쪽, 고 25쪽)

1. 제1조(목적)

가. 학교생활기록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의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색 인

(4)

4단 결재 105

(ㄱ)

가정폭력 66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80
 결과 25
 경조사 22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71
 관광지명 110
 교과세특 78
 교양교과 76
 교지 112
 기관명 46, 64
 기구명 108
 기부 48
 기타결석 28
 기타지각·조퇴·결과 28

(ㄴ)

누가기록 60, 92

(ㄷ)

다독상 86, 90
 단기결석 29
 단체명 108
 도서 중복 86, 87
 도서벽지 12
 도서출간 112
 동아리명 46, 108
 동아리활동 48, 50
 등급 32
 등위 32

(ㄹ)

랜드마크 110

(ㄴ)

미이수 54
 미참여 40

(ㄷ)

봉사활동 66, 94
 봉사활동 내용 64

(ㄷ)

성적 7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70
 소년보호재판 24
 수업량 유연화 80
 수정 72
 순회교육 58
 스포츠 리그 44
 실적 68

(ㄹ)

아동학대 66
 영문 107
 영주증 96
 외국어 107
 외국인 성명 6, 96
 원격수업일수 30
 원격지 12
 위탁 34
 위탁학생 58, 66, 74
 유급 8
 유급, 수료 8
 유예 18
 유적지명 110
 유학 14
 임원 36
 입력 주체 72

(ㄱ)

자격증 34

자유학기 78

자유학기활동 84

자유학기활동 미참여 82

자율동아리활동 49

자율탐구활동 68

자율활동 42, 44, 60

자치활동 36, 38

작자미상 85

작품명 70

장기결석 26, 58, 88

재임기간 36

저자명 85

전입 71

전출 78, 84

전출입 12

정원 외 학적관리 10

정정 34, 96, 98, 100, 101, 105, 106

정정 주체 98

정정대장 104

조사·심리기간 24

조직명 108

조치사항 20

조퇴 25

졸업생 106

주제 68

중복 90

중복기간 자료 삭제 20

증빙자료 98, 101

지각 25

지역명 46, 110

진로탐색활동 56

진로활동 42, 52, 54, 56, 60

진로희망분야 100

(ㄴ)

체험활동 62

출결 처리 25

출결상황 특기사항 26, 28, 29

출석인정 결석 22, 24

(ㄷ)

특기사항 58

(ㄹ)

표기방식 변경 96

(ㄺ)

학교 밖 교육기관 6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시기 102

학생 성명 114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73

학업중단 50, 88

학적 변동 사유 14

한자 107

행사활동 44

01
인적·학적사항

02
출결상황

0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0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
정정사항

11
기타사항 등

I 기획

유희승(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과장)

김승환(교육부 교육연구관)

심대현(교육부 교육연구사)

강영민(교육부 교육연구사)

김수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생평가지원센터 센터장)

최인봉(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하은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파견교사)

김은섭(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하정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I 집필진

송준현(광주 은빛초)

정준형(울산 옥서초)

이석재(충북 가덕중)

권오현(서울 경신중)

정진구(강원 함태중)

권송은(충남 당진고)

박소영(부산 부산과학고)

이수정(세종 아름고)

안정선(전북 칠보고)

이종혁(서울 남강고)

2023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발행일 | 2023년 12월

발행처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소 |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편집·인쇄 | ㈜다원기획

전화 : 044) 865-8115 FAX : 044) 865-8116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월현윗길 38-35

자료 탑재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https://star.moe.go.kr/web/main/index.do>)

※ 이 사례집은 2023년 학생부 신뢰 회복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질의·회신 대표 사례 확산을 통해 학생부 정책 이해도 향상 및 학생부 기재역량 지원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